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15 선고 2021가합4020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A(개명 전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진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6.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415,625,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15,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및 구상금 채권 발생

원고는 주식회사 D, E, C, F, 주식회사 G(이하 ‘관련 사건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799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관련 사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2,697,888원 및 그 중 2,049,776,83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C에 대해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1) C의 모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2.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C, 피고, I, J가 있다.

2) 피고는 C, I, J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이에 따라 2016.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법정상속지분인 1/4의 가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 1) 이 사건 분할협의를 2013. 12. 31. 이루어진 것이고 늦어도 피고와 C이 약정서를 작성한 2015. 9. 22.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있었으므로 2021. 3. 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 2) 가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이 채무 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분할협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분할협약이 실제 이루어진 날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원인란에 ‘2013. 12.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C, I, J는 2016.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에 의한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6. 13. 위 상속에 의한 협의분할 계약서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¹⁾을 한 점, ②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등기예규 제438호는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소유권 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경우 실제 분할협의시기와 관계없이 등기원인날짜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로 하여 등기가 마쳐지는 점, ③ J는 망인이 사망하였을 무렵 망인의 상속인 전원이 모여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하나, 다른 상속인인 C, I는 망인이 사망하였을 무렵이 아닌 2015. 9. 22. 각자 피고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어 상속분과 상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분할협약이 등기부에 기재된 2013. 12. 31.이나 상속인 전원이 아닌 C, I만 약정서를 작성한 시기인 2015. 9. 22.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상속에 의한 협의분할 계약서의 작성일인 2016. 6. 10.경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3. 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C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잃게 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채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C이 C의 남편인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액수, 피고가 평소 망인을 부양하는 등의 기여도, 피고가 I, C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동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7억 6,500만 원이었고,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4억 1,000만 원으로 명백하게 차이가 있었던 점2), 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가 C에게 2004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피고와 C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반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며,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20.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1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 평균가격이 1,885,000,000원인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C의 상속지분이 1/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부동산 중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은 471,250,000원(= 부동산 가액 1,885,000,000원 × 상속지분 1/4)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415,62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415,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숙, 판사 권슬기, 판사 김형준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벽식조
 면 적 : 133.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 50274.1㎡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50274.1분의 85.317

(이상 현 소유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관할)

소유권이전등기의 표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6년 6월 13일
 접수 제30946호 갑구 순위번호 제2번
 소유자 (개명전)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갑 제6호증)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6년 6월 1.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016년 6월 1.0일의 오타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망인 사망 당시 임차인 K의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이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K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조차 받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